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5년 7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단순히 상위법을 재 기재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조례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제9조를 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안 제8조1항, 제8조제7항)

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6항)

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취소' 절차 및 사유 규정 신설(안 제11조, 제12조)

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관련 조례 제13조제1항부터 제2항 까지를 삭제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준용으로 법에 없는 제출서류인 상생협력계획서 제출부담을 없애고, 조례 제13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내용과 제14조의 조건 등의 부과 내용을 통합하여 규정(안 제13조)

마.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제13조의 2 규정을 삭제하고,「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를 준용(안 제13조의2제1항)

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 신설 (안 제13조의2 제2항부터 제5항까지)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협의회 요청 등

사. 그 밖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및 용어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및 「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성별영향평가 : 2015. 5. 13

○ 개정안 중 제8조 1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 비율을 한쪽 성이 60%이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권고 받았으나 사실상 당연직이 4명으로 위촉의 폭이 제한되어 미반영

3) 입법예고 : 의견없음 (2015. 5. 28 ~ 6. 20)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상생발전의 실태조사)"를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상생발전"을 "유통산업"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구성한다"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중 "소요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변경하고자”를 “취소하고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을 “취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변경”을 “지정하거나 취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변경”을 “지정하거나 취소”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을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51퍼센트”를 “55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절차는 협의회의 의결을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발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4호----------.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둔다.
②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삭 제>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유통업무 소관부서 과장 2. 군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군 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4. 군 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⑥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⑦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 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과 관련하여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 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필요한 경비----------.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라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신 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소하고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④ ----------취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시 고려사항) ----------지정하거나 취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과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 등을 부과 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 협력 사업계획서	제13조(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 휴업 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삭 제>
2. 의무휴업일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일로 하며, 성주전통시장(5일장)날인 2일, 17일로 한다. 다만, 명절(설, 추석)이 속한 월(月)은 1회에 한해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그에 관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 하여야한다.
<신 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④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의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절차는 협의회의 의결을 합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 설>	⑤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 등은 군수에게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성주군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전통과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 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삭 제>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시행에----------. ----------